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 경력경쟁채용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운전	운전서기 (8급)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적용	운영지원과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 분	업 무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등 제반업무○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구 분	응시 자격 조건
운전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국내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요건

구 분	채용 우대 사항
운전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운전)관련 근무경력 (근무경력별 차등우대)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전체), 승합자동차(전체)를 운행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1.1.1.이후)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종류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참 고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 】

■ 직무관련 근무경력 (근무경력별 차등 우대)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전체), 승합자동차(전체)를 운행한 경력**
 -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1.1.1.이후)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를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등 경력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 제8호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직위, 연락처 및 서명(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재
- 우대요건 상의 관련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년 \times (20시간 / 40시간) = 1년$ 인정
-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인원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로 갈음 하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증빙자료(①,② 모두제출) : ①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교통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종류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 등급별 차등배점, 복수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들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 책정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1.6.21.(월)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1.6.29.(화) 실시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1.7.16.(금) 17:00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1.5.24.(월) ~ '21.5.28.(금),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5 / 팩스 : 02-2110-015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
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9. 제출서류

○ 총 11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8급 5,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mm,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mm	필수
6. 자격증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사본	필수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7.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정부)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범위 설정 ※ 공고일 이전 발행분,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p>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 제8호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업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전체), 승합자동차(전체)를 운행한 경력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1.1.1.이후)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를 모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직위, 연락처 및 서명(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재 ○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자료①② 모두제출 : ①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p>9.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p>10.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 	필수
<p>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1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단의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필수
<p>※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p> <p>※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p> <p>※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chan89@korea.kr)로도 제출</p> <p>※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p>		

10. 기타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han89@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7. 16. ~ 8. 6.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경력 및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운전서기	운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등 제반업무 ○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
-------------	---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운전)관련 근무경력(근무경력별 차등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전체), 승합자동차(전체)를 운행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1.1.1.이후)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종류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성명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분야)	직렬 (직류)
	방송통신위원회 (운전)	운전

■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목록	작성 여부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필수)	
2	응시원서(필수)	
3	이력서(필수)	
4	자기소개서(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6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사본(필수)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운전경력증명서(필수)	
8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병역 확인용)	
10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필수)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3호>

응시원서

본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운전서기(운전)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요건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운전서기(운전)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하단의 작성자 확인(날짜, 성명, 서명)만 자필로 기재하되, 일자(작성일자)는 작성일을 기재

※ 필요에 따라 행, 쪽수, 글씨크기는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작성할 수 있음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자격

○ 운전면허 자격증

① 필수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면허내용·면허증 번호·취득(예정)일·발급기관은 운전면허 자격증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3. 우대요건 관련

○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 후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전체), 승합자동차(전체)를 운행한 경력

※ 화물,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제외

-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11.1.1. 이후)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① 필수 작성

②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교통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종류 등에 따라 차등배점

○ 자격증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자격증 명·자격번호·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운전	성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 ○ (서명)

<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운전	성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 ○ (서명)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운행차량 ②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③	비고 ④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주) 00	주임	기관장 차량 운행	승합 (소형, 00인승)	시간제 (주 3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증명기관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 _____ (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급자</td></tr> <tr><td style="width: 50%;">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 </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td></tr> <tr><td style="width: 50%;">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 </table>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기관장 차량 운행, 관광버스 운행, 행정업무 수행,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 업무/통근버스운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운행차량 : 승용(대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화물(대형) 등 실제 운행 차량 기재 (예) 의전업무수행(승용중형), 통근버스운행(승용대형) 등 ③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비전임의 경우, 일주일 기준 근무 시간 기재) ④ 비고 : 실제 운행차량 인승 기재																

<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요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